

#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 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20년 7월 ~ 12월(6개월)
-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- 보 수: 월 481,04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- \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: 1명
 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1명
- 모집분야
 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(직무: 사무 1명)
- 모집기간: 2020. 06. 18(목)~06. 24(수)

## 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
 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###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  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(임대업 제외)  
※ 단,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'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' 제출 시 신청 가능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
(단,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)
  -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
  -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 -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
  -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, 임직원

4. 제출서류(①~④ 공통, ⑤~⑧ 해당자에 한함)

- 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- 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) 1부.
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.
- 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·뒷면) 1부.
  - 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- ④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- 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- ⑤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.
  - ※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- ⑥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
  - ※ 사무 및 컴퓨터 자격증 등 배치직무와 연관 있는 자격증 포함
- ⑦ (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(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
- ⑧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 -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 신청자에 한함

**(참고) 여성가장 정의**

가. 이혼, 사별(死別)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

나.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

다.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(世帯)를 같이하는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, 질병, 군복무 및 재학(在學)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

라.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※ **관련근거**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,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<여성가장 제출서류>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
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
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
- **접수방법: 직접 방문제출, 우편, 팩스**  
(단, 우편이나 팩스 접수자는 접수서류 발송 후 접수처에 연락하여, 접수서류가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)
- **접수처: 김포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**
  - 주소(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, 2층 연합회사무실)
  - 연락처(031-988-5445 / FAX(031-988-5446))

## 5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### 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\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- 24세 이하(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- 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 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- \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  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\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- \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(TEL. 031-988-544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06월 18일

사단법인 김포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장